

	<h1>보도 반박</h1>			
	보도	배포 후 즉시	배포	
책 임 자	금융위 기획협력팀장 오 화 세(02-2100-1730)	담 당 자	오 동 헌 사무관 (02-2100-1732)	

**제 목 : 자금세탁방지법 최다 위반 금융기관에 상까지 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서울신문 2.15일 가판 보도에 대한 반박)**

1. 기사 내용

- 서울신문은 2.15일자 「‘자금세탁방지법’ 최다 위반 금융기관에 상까지 졌다」 제하의 기사에서,
 - “S은행·W카드 업계 최고 징계액 담당 책임자들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자금세탁방지법 표창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알음알음으로 내부에서 추천해 ‘깜깜이 선발’을 한다는 얘기다.”.....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과태료 산정 기준도 주먹구구식인 데다 징계액도 미미해 ‘안 지켜도 되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도 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① 표창 관련 내부 규정이 없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금융위원장 표창 업무지침」 과 「자금세탁방지의날 표창 계획(지침)」에 따라 매년 표창 대상자를 선정·표창하고 있으며, ‘20년에도 이에 따라서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② 표창 관련 지침에 따라 기관 표창과 개인 표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 기관 제재를 받은 경우 기관 표창을 제한하고, 개인 제재를 받은 경우 개인 표창을 제한하여 표창하고 있습니다.
- 특히, 보도된 S은행, W카드 담당자에 대한 표창과 관련해서는, 대상자를 결정하는 공적심사일(20.11.12) 이후에 S은행과 W카드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져 표창대상자 결정 당시에는 고려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 또한, 표창 수상자들은 당해 금융회사가 과태료를 받은 원인 행위(위반행위)를 한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③ 과태료 금액은 '19.7월부터 대폭 상향 되었습니다.

- 징계액이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19.1월 법률 개정('19.7.1. 시행)을 통해서 과태료 상한금액을 기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에 '19.7월 이후 위반 건에 대해서는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④ 과태료 등 제재는 민간위원이 참여하여 공정하게 결정됩니다.

-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원(위원 6명 중 2명)이 참석하여 법과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에 따라서 동기 및 위반 결과 등을 고려하고, 가중·감경 규정을 감안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건별 부과 원칙에 따라 위반 건수가 많을수록 과태료가 증가함

➡ 동 기사는 사실과 다르므로 관련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표창 대상자 선정 기준

-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수행 관련 유공자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법령·제도 구축 업무 유공자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구 상호평가 수검 유공자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제도 이행·교육 유공자
-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제공·활용 업무 유공자
- 기타 금융정보분석원 업무협조에 기여도가 높은 자

2. 표창 기준 : 공적기간

□ 공무원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 추천 당시 재직자가 소속된 부처 또는 지자체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 ※ 타 부처 소속 공무원(지자체 포함)은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필요
- ※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은 「공무원임용령」제31조 제2항에 따름 (임용전 병역의무복무 및 그 외 휴직기간 제외)

□ 민간인 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체표창

- 표창추천일 기준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금융산업 발전 등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
- ※ 표창추천일은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위원회 인사담당부서로 추천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3. 표창추천 제외대상

-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추천 가능
 - ※ 징계 및 불문(경고)기록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등
 - 주요비위로 징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불가
 - ※ 주요비위: 금품·향응 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미 주식의 취득·신고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재직 중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기타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민원 등을 야기하여 금융위원장 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단체 포함)
 - ※ 단,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고려, 민원 야기 등에 대하여 신중히 조사하여 추천하여야 함
- 금융관련 법령 위반자
 - 금융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자는 아래표의 기간동안 표창을 제한

< 징계 유형별 포상제한 기간 >

구분	개인(임원)	개인(직원)	기관	제한기간
중징계	해임권고	면직	허가취소	4년
	직무정지	정직	업무정지	3년
	문책적경고	감봉	시정명령	2년
			기관경고	
경징계	주의적경고	견책	기관주의	1년
	주의	주의/경고		

- 이중표창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표창을 수여할 수 없음
- 재표창 금지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개인) 1년 이내에 다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 2년 이내에 동일 분야에 대하여 다시 받을 수 없음
 - ※ 단, 성적표창 및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등에 따른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정부포상 수여자(모범공무원 포함)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원장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호	1,800
나.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1호	900
다.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1호	6,000

라.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2호	1,800
마.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2호	6,000
바.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및 정보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제2항제3호	1,800
사. 금융회사등이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6항에 따른 명령·지시·검사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3호	10,000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제24조(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 자문기구로서 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 금융정보분석원장
2.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3.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4. 정보분석심의위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0인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자
 -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회사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준법감시 업무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금융 또는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합산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및 기타 검사수탁기관에서 합산하여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2. 예정금액의 산정

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확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결과 \ 동기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50%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 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fsc@korea.kr	 1339 금융관리청 콜센터
--	---	---	------------------------------	--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